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☑조치 □기타)

	담당 디지털금 부서	금융검사국		김상록 선임검사역	연락처	3145-7427
요청대상 행위	□ 내부업무망 단말기에서 ① 금융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입법예고/규정변경 예고 항목 ② 국민참여입법센터 ③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이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*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3호,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제1항					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
판단이유	<ul> <li>□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5조제1항제3호 및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사제2조의2제1항에서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'업무상 필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'라 함은</li> <li>○ 망분리 환경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내부 업무용시스템을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합니다.</li> <li>○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요청대상 행위가 '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연결해야 하는 경우'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, 단정보 취득 및 취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망분리 적용 예외사유에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* (참고) '21.610. 및 7.13. 내부 업무용단말기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은행, 정부, 공단 등과 웹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은 망분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을 할</li> </ul>					있는 '업무상 필수적 근란하여 불가피하게 나 있는 경우를 의미 으로 특정 외부기관에 이 어려우나, 단순히 용 예외사유에 해당 은행, 정부, 공단 등과 같은